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선박교통관제사 자격에 고등학교·고등기술학교 또는 고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에서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선박교통관제와 관련된 교육을 이수하고 5급 항해사 이상의 면허를 취득한 사람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를 보완·개선하려는 것임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 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항(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) 제1호 중 “면허를”을 “면허(이하 “5급 항해사 이상의 면허”라 한다)를”로 하며,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학교에서 개설한 선박교통관제와 관련된 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5급 항해사 이상의 면허를 취득한 사람

가.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·고등기술학교
나.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

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선박교통관제와 관련된 교육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조(선박교통관제사의 자격) 법 제16조제2항에서 “해양수산부 령으로 정하는 공무원”이란 해 양경찰청 소속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.	제5조(선박교통관제사의 자격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1. 「선박직원법」 제4조에 따 른 5급 향해사 이상의 <u>면허</u> 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면허 취득 후 승무경력이 1년 이상인 사 람	1. ----- ----- <u>면허</u> (이하 “5급 향해사 이상의 면 <u>허</u> ”라 한다)를 ----- --
2. (생 략) <u><신 설></u>	2. (현행과 같음)
	3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 <u>당되는 학교에서 개설한 선박</u> <u>교통관제와 관련된 교육을 이</u> <u>수한 사람으로서 5급 향해사</u> <u>이상의 면허를 취득한 사람</u> 가.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 <u>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·</u> <u>고등기술학교</u> 나.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 각 <u>호에 따른 학교</u>
<u><신 설></u>	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선박교통 <u>관제와 관련된 교육에 관한 세</u> <u>부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하</u> <u>여 고시한다.</u>